

차 례

공 고

○제2018-8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2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18- 80호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결정하기 전에 입안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설명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8년 2월 9일(금), 오후 13:00~14:00

나. 장소 : 상계3,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

3. 상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개요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6,084.9	—	66,084.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4,555.9	—	34,555.9	52.3	—
	도 로	24,862.9	—	24,862.9	37.6	—
	공 원	5,194	—	5,194	7.9	—
	공공공지	4,499	—	4,499	6.8	—
택지 (획지)	소 계	31,529	—	31,529	47.7	—
	6-1	30,897	증) 632	31,529	47.7	공동주택
	6-2	224	감) 224	—	—	광명교회
	6-3	408	감) 408	—	—	성화교회

4.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처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께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우편, 팩스, 인편)으로 “선정발표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발표인을 3인 이내로 선정합니다

다. 수인이 작성한 “선정발표자 신청서”는 대표자 1인이 선정되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대표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자 신청주소 및 팩스번호

— 주 소 : 우)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주택사업과)

— 팩스번호 : 02-2116-4635

라.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하고,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사회자의 진행 식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주택사업과(☎2116-3928)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선정발표자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핸드폰 :)
	신청자격	당사자,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종사자), 단체대표 (소속단체:), 기타
	주요경력 및 이력	
	권리물건	
발표요지		
신청자 유의사항	①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전 18:00시까지 접수에 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3인 이내 선정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합니다. ②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③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⑤ 발표자별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⑥ 기타 공청회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주택사업과(☎2116-39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노원구청장 귀하